

챔피언스시티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안내



➔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안내

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 참고사항			
※ 2026. 02. 06.부터 개정·시행되는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거래 당사자인 사업주체 및 계약자는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며,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1에 의거하여 거래가격 6억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 「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」 제출을 의무화합니다.			
※ 챔피언스시티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서와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대량 신고하여 계약자님들의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.			
※ 아래 항목에 따라 전체 분양금액에 대한 계약자의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방식을 결정하여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.			
※ 단, 향후 법 개정에 따라 해당기관에서 자금조달계획서 항목별 증빙자료를 요구할 경우 해당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.			

구분	항목	상세항목	내용
① 자금 조달 계획	자기 자금	② 금융기관 예금액	예금(적금) 등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본인 명의의 자금(예적금 등)
		③ 주식·채권 매각 대금	주식·유가증권 등 매각으로 조달하는 자금
			이에 준하는 자금
		④ 증여·상속	가족 등 증여·상속 가족 등으로부터 증여·상속받아 조달하는 자금
		⑤ 현금 등 그 밖의 자금	보유 중인 현금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지 아니하고 보유 중인 현금
			펀드/보험 금융상품 해지 등 예금(적금)이 아닌 금융상품 투자자금을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
			이에 준하는 자금 타인에게 대여한 자금 등을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 등
		⑥ 부동산 처분대금 등	타 부동산 매도액 타 부동산을 매도하여 조달하는 자금
			기존 보증(전세)금 기존 보증(전세)금을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
			중전 부동산 권리가액 재건축/재개발 등으로 발생한 중전 부동산 권리가액 등
			이에 준하는 자금 부동산 등의 매각(기존 임대차 보증금 회수) 등을 통하여 조달하는 자금
	차입금 등	⑧ 금융기관 대출액	주택담보대출 금회 취득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실행(승계) 자금
			신용대출 위의 주택담보대출 이외 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대출 자금
			그 밖의 대출 타 부동산 담보대출 등 그 밖의 금융기관 대출액 및 종류 기재
		금회 취득하는 주택은 제외하고 그 외 주택의 보유 여부에 ✓ 체크, 보유란에 ✓ 체크한 경우 보유 중인 주택의 수를 기재 (분양권, 입주권 등 권리상태의 주택을 포함하여, 부부공동명의 등 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각 건별로 산정하여 기재)	금융기관 대출액 중 주택담보대출액을 기재한 경우
			현 임차인 전세(보증)금 승계 현 임차인 전세금을 매도인으로부터 승계하는 금액
		⑨ 임대보증금	신규 임대차 계약 금회 취득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통해 조달하는 자금
			⑩ 회사지원금· 사채 법인/개인사업자 등 제3자에게 대여하는 자금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된 대부업체 및 소속된 회사 등의 주택자금 대여금 등 (상환기간 등이 약정된 자금)
		⑪ 그 밖의 차입금	제3자 등 그 밖의 방법으로 대여하는 자금 가족/친인척 등으로부터 대여하여 조달하는 자금 (상환기간 약정이 없거나 불분명한 대여금)
⑭ 조달 자금 지급 방식	⑮ 계좌이체 금액	은행 등 금융기관 이체지급 방식	증빙가능한 금융기관 이체지급 방식으로 지급하는 금액
	⑯ 보증금·대출금 승계	기존 대출금 임대차 보증금 승계	매도인의 기존 대출금 전세보증금 승계하는 금액
	⑰ 현금 등 기타지급	현금 등 기타자산 지급	계좌이체 또는 승계한 금액이 아닌 현금 등으로 지급하는 금액 및 그에 대한 지급사유를 기재
⑱ 입주 계획	본인 입주	본인이 입주할 예정인 경우	주민등록상 가족과 함께 입주하는 경우
	본인 외 가족입주	본인 외 가족입주 예정인 경우	주민등록세대가 분리된 가족이 입주하는 경우 (ex. 분가한 자녀가족, 본인의 부모만 입주, 형제 등)
	임대(전월세)	입주하지 않고 임대할 계획인 경우	제3자 등에게 임대할 경우
	그 밖의 경우 (재건축 등)	입주 또는 임대 이외	재건축/재개발 등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행사 등이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등

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1호의3서식] <개정 2026. 2. 6.>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(rtms.molit.go.kr)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시를 합니다. (앞쪽)
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

제출인 (매수인)	성명 (법인명)	주민등록번호 (법인 · 외국인등록번호)	
	계약자명	계약자 주민등록번호	
	주소 (법인소재지)	(휴대) 전화번호	
	등본상 거주지 기재(도로명 주소)	계약자 연락처	
① 자금 조달계획	해당사항 체크 자기 자금	② 금융기관 예금액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 예금액(적금 등) 원	③ 주식 · 채권 · 가상화폐 매각대금 본인 명의의 주식·채권금액 원
		해외예금을 국내 송금한 경우 (해외 금융기관명 :) 원	[] 주식 · 채권 매각대금 원 [] 가상화폐 매각대금 원
		④ 증여 · 상속 가족 등 증여·상속으로 [] 증여 (금액 : 조달하는 자금 원) 증여세 신고 여부 : [] 신고 [] 미신고 [] 상속 (금액 : 원) 상속세 신고 여부 : [] 신고 [] 미신고	⑤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보유 중인 현금, 펀드 등 다른 원 [] 외화 (금액: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자산 원) 외화반입 신고 여부 : [] 신고 [] 미신고
		[] 부부 [] 직계존비속 (관계:) [] 그 밖의 관계 ()	해당사항 체크 [] 보유 현금 [] 그 밖의 자산 (종류:)
		⑥ 부동산 처분대금 등 원	⑦ 소계 원
		[] 주택 · 토지 원 [] 임대보증금 (취득주택 외) 원 [] 기타 (종류:) 원	②+③+④+⑤+⑥ 자기자금 합계 원
		⑧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원	(금융기관명 :) 원 (금융기관명 :) 원 (금융기관명 :) 원 (금융기관명 :) 원 (대출 종류: 중도금 대출 원
		기존 주택 보유 여부 (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만 기재) [] 미보유 [] 보유 (건)	⑩ 회사지원금 · 사채 원
		⑨ 취득주택의 임대보증금 금회 취득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통해 조달하는 자금 원	[] 회사지원금 본인 소속 회사 또는 원 [] 사채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금액 원
		⑪ 그 밖의 차입금 제3자 등 그 밖의 방법으로 대여하는 자금 원	⑫ 소계 원
		⑧+⑨+⑩+⑪ 차입금 등 합계 원	
⑬ 합계	⑦+⑫ 합계금액=총 분양대금 원		
⑭ 조달자금 지급방식	총 거래금액	⑬ 항목과 동일한 금액 기재 원	
	⑮ 계좌이체 금액	⑬ 항목과 동일한 금액 기재 원	
	⑯ 보증금 · 대출 승계 금액	원	
	⑰ 현금 및 그 밖의 지급방식 금액	작성생략 원	
	지급 사유 ()	()	
⑱ 입주 계획	해당사항 체크 [] 본인입주 [] 본인 외 가족입주 (입주 예정 시기: 2030 년 11 월)	[] 임대 (전 · 월세)	[] 그 밖의 경우 (재건축 등)

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나목, 같은 표 제3호가목 전단, 같은 호 나목, 같은 표 제3호의2가목 전단,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6항 · 제7항 · 제9항 · 제10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합니다.

제출인 계약자명
시장 · 군수 · 구청장 귀하
년 작성생략 일
(서명 또는 인)